#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370 발의연월일: 2024. 8. 29.

발 의 자:김미애·김예지・박상웅

인요한 · 강승규 · 박준태

이종배 · 임이자 · 김종양

박수민 · 조경태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

최근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.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는 급속도로 확대·재생산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·재산적 피해를 가져오고 있음.

이에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시키고,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가. "허위조작정보"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

는 정보 중 경제적·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정의함(안 제 2조제1항제14호 신설).

- 나.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 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허위조작 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(안 제44조의7 및 제44조의 9).
- 다.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하고 허위조 작정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(안 제44조의10).
- 라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(안 제44조의11 신설).
- 마.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(안 제72조제1항).

##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"허위조작정보"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·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한다.

제44조제1항 중 "정보"를 "정보 및 허위조작정보"로 하고, 같은 조 제 3항 중 "정보"를 "제1항에 따른 정보"로 한다.

제44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"명예훼손 분쟁조정부"를 각각 "온라인분 쟁조정위원회"로 한다.

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허위조작정보

제44조의9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허위조작정보

제44조의10의 제목 "(명예훼손 분쟁조정부)"를 "(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정보"를 "정보 및 허위조작정보"로,

"명예훼손 분쟁조정부"를 "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명예훼손 분쟁조정부"를 "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명예훼손 분쟁조정부"를 "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"로, "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"을 "필요한"으로한다.

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4조의11(손해배상 책임)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의7제1 항제2호의2에 따른 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다만,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.
  -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 - 1.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
  - 2.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
  - 3. 위반행위의 기간·횟수
  - 4. 손해를 입힌 이용자의 재산상태
  - 5.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

제66조제5호 중 "명예훼손 분쟁조정부"를 "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"로 한다.

제72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3.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

제75조의2 전단 중 "제72조제1항제2호"를 "제72조제1항제1호의3, 제2호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) 제4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 및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는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라인분쟁조 정위원회가 승계한다.
  -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,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.
  -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행한 행위나 명

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행위는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행위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행위 로 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 ①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14. "허위조작정보"란 정보통신
	<u>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</u>
	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
	<u>적 · 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</u>
	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
	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
	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한
	<u>다.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4조(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	제44조(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
호)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	ই) ①
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	
를 침해하는 <u>정보</u> 를 정보통신	<u>정보 및 허위조작</u>
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.	<u>정보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	③
망에 유통되는 <u>정보</u> 로 인한 사	<u>제1항에 따른 정보</u>
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	
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	

하기 위하여 기술개발·교육· 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 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.

제44조의6(이용자 정보의 제공청 구)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 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 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 · 형사상의 소를 제기 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 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 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(민·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 ·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 다)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.

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 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

<u>온라인분</u> <u>쟁조정위원회</u>
② <u>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</u>

하다.

- ③ ④ (생 략)
- 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)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 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2. (생략)

<신 설>

- 3. ~ 9. (생략)
- ② ~ ⑤ (생 략)
- 지 책임자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, 매출액,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・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(이 하 "불법촬영물등"이라 한다)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 (이하 "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"라 한다)를 지정하여야 한다.
  - 1. ~ 3. (생략)
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
등) ①
1.•2. (현행과 같음)
2의2. 허위조작정보
3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44조의9(불법촬영물등 유통방
지 책임자) ①
1. ~ 3. (현행과 같음)

### <신 설>

- ②·③ (생 략)
- 제44조의10(명예훼손 분쟁조정부) 저
  -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, 그중 1명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
  - ② <u>명예훼손</u>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.
  -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 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 3조의2제2항, 제35조부터 제39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분쟁조정위원회"는 "심 의위원회"로, "개인정보와 관련 한 분쟁"은 "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

4. 허위조작정보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44조의10(온라인분쟁조정위원
<u> </u>
정보 및 허위조작정보
온라인분쟁조
정위원회
,
②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
<삭 제>

- 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 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"으로 본다.
-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・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④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	_
	_
필요한	_

- 제44조의11(손해배상 책임)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의 의7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. 다만, 손해를입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있다.
  -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 -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
     를 인식한 정도

제66조(비밀유지 등)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 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 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~ 4. (생 략)
- 5. 제44조의10에 따른 <u>명예훼손</u> <u>분쟁조정부</u>의 분쟁조정 업무 제72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·1의2. (생략) <신설>

2.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
<u>해 규모</u>
3. 위반행위의 기간·횟수
4. 손해를 입힌 이용자의 재산
상태
5.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
노력한 정도
제66조(비밀유지 등)
시[00 <u>年</u> (미린11기 중)
1. ~ 4. (현행과 같음)
5 <u>온라인분</u>
쟁조정위원회
제72조(벌칙) ①
<u>.</u>
1.·1의2. (현행과 같음)
1의3.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
를 위반하여 허위조작정보를
<u> </u>

2. ~ 5. (생 략)
제75조의2(몰수·추징) 제72조제1
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,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.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.

<u>유통한 자</u>
2. ~ 5. (현행과 같음)
제75조의2(몰수·추징) <u>제72조제1</u>
<u>항제1호의3, 제2호</u>
<u>.</u>